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월 25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2년 1월 7일
- 나. 제안자: 윤유선 의원 외 8명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월 17일
- 라. 상정일자: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.2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윤유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관내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’과 ‘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2) 청소년, 위기청소년, 청소년안전망,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,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3) 조례의 기본이념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
- 4) 청소년안전망 구축, 사업, 심의위원회의 기능,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~제8조)
- 5)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, 기능, 이용료,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9조~제14조)
- 6) 시행규칙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9조
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 및 제29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해당부서: 아동청소년과
- 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2. 1. 7. ~ 1. 11.) 결과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허은옥)

가. 제정취지

-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의 “청소년안전망”을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·보호·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및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의 규정을 조례 제정의 근거로 함

○ **안 제2조(정의)** “위기청소년”, “청소년안전망”, “청소년상담복지센터”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 함

- 위기청소년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
- 청소년안전망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·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·보호·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

○ **안 제3조(기본이념) · 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청장은 청소년이 학교, 가정, 사회로부터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

○ **안 제5조(청소년안전망 구축)** 청소년안전망 구축 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

- **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(법 시행령 제4조제1항)**
1.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
 2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
 3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
 4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 5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

6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7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
8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9.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(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10. 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
11. 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
1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
13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(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
○ **안 제6조(청소년안전망 사업)**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내용을 규정

-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·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
-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·운영
- 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구조, 보호, 의료지원,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등

○ **안 제7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**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 구성근거¹⁾와 기능을 규정함

-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- 제5조제2항의 청소년안전망 구성에 포함되는 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 지역자원 개발·연계·관리에 관한 사항
-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, 조례·규칙의 제·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

○ **안 제8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· 제9조(심의위원회 회의)**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1)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, 부위원장은 담당과장,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
- 위원은 안 제5조제2항의 청소년안전망 구성에 포함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
- 정기회의는 반기 1회(연 2회),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
-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함

○ 안 제10조(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· 제11조(상담복지센터의 기능)
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대해 규정

-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규정은 법 제29조2)
-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음
- 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을 따름
-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
 -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·복지지원
 - 상담·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 - 상담 자원봉사자와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
 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
 - 청소년 폭력·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 지원, 일시 보호 지원
 -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 - 학교폭력, 가정폭력, 성희롱, 성폭력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

2)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청소년안전망 구축·운영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청소년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 운영
-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

○ **안 제12조(위탁 및 운영지원)**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르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

○ **안 제13조(이용료 등의 징수와 감면)** 상담복지센터의 상담, 교육 등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 또는 취약계층 자녀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용료 감면대상을 정함

-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
-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

○ **안 제14조(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)** 센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둠

다. 종합의견

- 「청소년 기본법」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양극화의 심화, 가족의 해체,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사회현상으로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,
-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.9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의 1.4배이며 OECD회원국 중 10위에 해당함
- 또한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각종 재난 재해와 사회적 참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직·간접적으로 체험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서는 각종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, 경찰서, 공공보건의료기관,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,
- 청소년의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이에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관인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1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,(시립화곡청소년센터 내) 지난 2020년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선도적

인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음

- 본 조례안은 이러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,
-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1) 참고자료 1부.

2) 관계법령 1부.

□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

1. 사업목적

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허브(Hub)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

2. 사업개요

- 지원근거: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9조(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) 및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- 위 탁 체: 케이씨대학교
- 위탁기간: 2019. 5. 8. ~ 2024. 4. 30. (5년)
- 운영 연혁
 - 2010. 3. : 개소(시설관리공단 위탁, 시립화곡청소년센터 내 위치)
 - 2014. 3. : 위탁체 변경(홍사단 위탁)
 - 2015. 7. : 강서청소년회관 3층 이전(전임 센터장 부임)
 - 2019. 5. : 위탁체 변경(KC대학교)
 - 2020. 12. : 화곡동 현 센터 준공 및 개소
- 위 치: 화곡로18길 14-5(화곡동)
- 직원현황: 9명
(센터장 1명, 팀장 1명, 상담원 3명, 행정원 1명,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3명)
- 사업내용
 - 가출, 학업중단 등 위기(가능)청소년 조기 발견 및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
 -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상담(부모포함) 서비스제공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운영

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8.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1.>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

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